

학생간행물발간에 관한규정

1996.10.01.제정 2001.03.01.일부개정 2004.03.01.일부개정 2006.08.01.일부개정
 2011.04.18.일부개정 **2012.08.01.일부개정**

<학생·장학봉사팀>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61조에 규정된 간행물의 사전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6.8.1.)

제 2 조 (간행물의 분류) 간행물을 발간하는 주체의 종류에 따라 학생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
1. 전교, 대학단위의 간행물
2. 학과단위의 간행물
3. 동아리(학생단체) 단위의 간행물
4. 개인단위의 학생 간행물

제 3 조 (전교, 대학단위의 학생간행물) ①전교 또는 대학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모든 원고를 지도교수의 사전지도를 받아야하며, 다음의 서류를 각 1부씩 갖추어 학생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(개정 2011.4.18, **2012.8.1.**)

1. 학생간행물발간신청서(지도교수 경유) (별지 제1호 서식)
2. 인쇄물내용사본 1부

②전교단위의 원고 지도교수는 학생처장, 대학단위의 지도교수는 학장으로 한다.

(개정 2011.4.18, **2012.8.1.**)

제 4 조 (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) ①학과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단체는 학과지도교수의 사전 원고지도를 거치고,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갖추어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승인된 간행물은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인쇄물 내용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학생처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. (개정 2011.4.18, **2012.8.1.**)

제 5 조 (동아리(학생단체) 단위의 학생간행물) ①동아리(학생단체) 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단체는 지도교수의 사전 원고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②승인된 간행물은 지도교수추천서와 인쇄내용물을 첨부하여 학생처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.

(개정 2011.4.18, **2012.8.1.**)

제 6 조 (개인단위의 학생간행물) ①본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 지도교수의 원고지도를 받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승인받은 간행물은 지도교수추천서와 인쇄내용물을 첨부하여 학생처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.

(개정 2011.4.18, **2012.8.1.**)

제 7 조 (편집, 인쇄의 지도) 학생간행물의 발간이 허가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처장은 사무처장과 협의하여 출판지원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11.4.18, 2012.8.1.)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